

5. 그 밖에 위원장이 법 제45조제2호의2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⑦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대통령령 제30659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청구하는 때”를 “청구하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석할 수 없는 때”를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심사위원회는 다시”를 “심사위원회는”으로, “정하여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다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로, “재적위원 과반수에”를 “출석위원 과반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를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로, “3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3개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취소”를 “취소명령”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선임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구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청사건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된 소청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유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5월 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660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